

데이터베이스 원시자료의 가공, 배열, 추적방법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원시자료 수집단계에서 법적 고려사항

최근에 신문보도의 지면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되고 있다.

시사보도, 경제기사, 과학·문화, 컴퓨터·스포츠 기타 각종 사건, 사고 등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주간신문, 경제신문 등 특수신문에 수록되는 정보들도 매우 유용한 것들이 많다. 또한 국내신문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외국의 신문들은 손쉽게 구독할 수 있다. 이러한 신문기사들을 수집·분류하여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여 전송한다면 매우 유용한데 데이터베이스로서 시장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신문기사 목록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문사측과 데이터베이스 제작 회사들 사이에 종종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재(素材)가 되는 '원시자료'의 수집·가공에 있다. 개개의 원시자료들을 ①최신의 유용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②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배열해야 하며, ③장기간의 추적된 정보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④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

여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야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신문기사 목록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함에 있어서 그 자료의 수집·가공 단계에서 저작권법상 특히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지난호(1996. 10월)에서 단순한 시사보도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논설·연재소설 그밖에 기사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심층 보도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저작물의 성격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신문에 보도되는 개개의 소재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이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예컨대, 사실의 경우는 신문사에게 저작권이 있다. 논설의 경우는 신문사와 논설 집필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재소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한 보도자료 예컨대, 교통사고·화재사건 기타 정치·사회·문화 등의 동정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심층보도자료가 있다. 흔히 특정기자가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면서 심층분석하고 비교하면서 보도한 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 둘째로, 저작물의 창작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보호된다. 단순한 시사보도 자료는 정보의 전달수단에 불과하다.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 한편으로 논설· 사설· 연재소설 그밖에 심층보도자료들은 저작자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료를 선택할 경우 반드시 창작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저작권자의 소재와 귀속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저작자가 저작물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도받은 사람이 저작권자가 된다.(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간에 저작권 행사에 관한 어떤 특약이 있을 경우도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소설이나 신문· 잡지 등에 수록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아닌 출판사· 신문사가 '저작권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따라서 원시자료를 수집· 선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된 권리자를 찾아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에서 다수의 저작물을 사용 허락 받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작권자의 소재 파악과 권리귀속의 확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서 유의할 사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에서 다 똑같은 소재라 하여도 그 가공방법의 여하에 따라서 저작권법상 저촉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소재의 선택· 배열에서 따라서 창작성의 여부가 결정되어 법적보호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소재의 선택방법은 크게 나누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선택적' 자료 수집방법

여러가지 소재들 예컨대, 신문기사들 중에서 자료의 유용성, 최신성, 창작성 등등 그 가치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요구된다. 컴퓨터 기사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가정해 본다. 각 신문마다 보도되고 있는 자료들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분류· 선택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전자문서(EDI), CALS, EC 등등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판단하는데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하게 된다. 컴퓨터 역기능과 범죄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와같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분류· 배열할 경우는 분명히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서 그 정보가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는 선택적 수집방법이 적절하다.

- 있는 그대로 '망라적 수집'

또 한가지 방법은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수집하는 「망라적 수집」이 있다. 이 방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소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있는 그대로 소재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신문기사자료」의 경우와 같이 신문에 보도된 기사는 무조건 수집하는 형태다. 망라적 수집은 수집과정에서 지적활동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단순한 기계적 작업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앞에서 선택적 수집은 일정한 기준과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소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정에서 창작적 노력을 인정받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망라적 수집은 기계적 활동으로 보호받기에 곤란하다. 망라적 수집과 기계적 배열은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예컨대, 단순히 알파벳순으로 또는 가나다순으로 정보를 배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연도순으로만 배

열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배열은 기계적 배열로서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시정보의 배열에서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창작적으로 배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단순한 망라적 선택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인건비 등 경비를 줄일 수 있어도 법적보호가 곤란하다. 또한 상업성이 뒤떨어진다. 앞에서 「신문기사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기사들을 그 기사의 내용에 따라 영역별로 분류하고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등 키워드 작업이 뒤따라야 법적보호가 가능하다. 단순히 기사모두를 기계적으로 배열한다면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소재의 가공에서 유의할 사항

데이터베이스 제작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편집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여기저기 짜집기 하여 순서를 바꾸거나 중간에 필요없는 자료들을 추가·배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도 복제권의 침해가 되며, 추가되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오히려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재를 가공할 경우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다.

- 단순한 '자료적 요약'

원시자료 즉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그 자료적 성격 등 개요만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특정인의 논문을 줄거리만을 요약하고 그 특성을 소개하는 정도로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체로 100자 내지 200자 기준으로 대략 요약했다면 자료적 요약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자료적 요약은 그 저작물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신문에 수록되는 '신간

안내 소개기사'를 들 수 있다.

- 상세한 (내용적 요약)

원저작물의 내용을 상세하게 거의 원작품과 같이 요약하였을 경우 '내용적 요약'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침해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원저작물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요약했을 경우 많은 독자들이 원저작물을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요약서로서 대체하게 된다. 따라서 원저작자와 출판사는 저작물의 시장을 빼앗기게 된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복제권 침해문제의 판단기준을 '시장성'에 두고 있다. 원저작자의 시장(저작물판매시장)을 잠식하여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침해의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맺음말

저작권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적용도 일종의 편집물로 보고 있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 참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법적보호에 관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계속해서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그 구성부분이 되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호된다.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항상 살피서 원시자료의 수집·선택과 가공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물 이용의 방법과 보상기준 등 적절한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